



“발주자 최고의 감동실현, CM의 약속입니다.”

한국 CM 협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

참 조 : CM담당 본부장

제 목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CM도입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서울특별시에서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CM을 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에 CM관련사항을 명시하여 시행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이번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우리의 실지(實地)를 회복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공사계약일반조건(CM관련사항)

○ 제33조 (건설사업관리자)

“갑(조합)”은 본 계약 이행의 완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시공사)”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자가 “갑”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4조 (사업경비의 대여)

“을(시공사)”은 “갑(조합)”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경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을”은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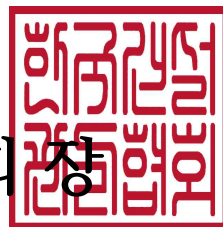
3. 사업경비 항목별 대여조건(CM용역비 항목 명시) : 별지1호 서식 (붙임)

나. 참고사항

○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는 서울특별시나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사업경비 항목별 대여조건 서식 1부. 끝.

한 국 C M 협 회



과장 강 현 준

시행 정책사업본부 - 301 (2011.10.20)

우 137-844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8-7 유니온빌딩 4층

전화 070-7510-1226 전송 02-585-2689

<http://www.cmak.or.kr>

mailboneyo@cmak.or.kr

(붙임)

[별지 서식]

사업경비 등 대여항목별 금융조건(제44조 제1항 관련)

항목 구분		대여금총액 (원)	금리(연%)	기간(월)	이자(원)
대분류	소분류				
사업경비	조합운영비				
	설계비				
	감리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측량비				
	안전진단비				
	인·허가비				
	각종 영향평가비				
	각종 소송비용				
	지질조사비				
	각종 수수료 및 기타 공과금				
	관리처분비용				
	각종 등기비				
	채권 매입자금				
	미동의자 등 매입자금				
	컨설팅 용역 수수료				
	민원처리비				
	기타경비				
이주비	이주비				
	이주비 조달경비				

- (주1) 조합은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경비 대여 항목을 추가·삭제 등 수정할 수 있음.
- (주2) 조합은 입찰시 필요한 자금과 대여조건을 제시하고, 시공자의 제안 범위 안에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 (주3) 조합은 대여조건에 미달한 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단, 입찰공고한 경우에 한함.